

AD ZONE

**GROW YOUR FUTURE WITH VERIZON WIRELESS**

Let

CLOSE

LOCATION LA중앙일보 > 뉴스 > 오피니언

이메일 | 프린트 | 기사목록 | -가 | +가 | 내 블로그에 담기

**오피니언**

외부 기고 칼럼

본 기사에 대한 댓글

- 0 개 -

### [이민] 상표도용 범죄로도 추방 [LA중앙일보]

이동찬 변호사

기사입력: 04.18.08 16:04

**문=** 1990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4년전 샵핑을 하다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고 2년전 고용주가 상표를 도용한 물건을 가게에서 팔다가 걸려 벌금을 내고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주권 재신청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답=** 상표도용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심한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도용범죄가 심한 중죄라면 그 범죄만으로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심한 중죄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위반한 주 형법과 연방법이 구조상 같아서 주형법을 위반하면 연방법의 심한 중죄가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법정서류에 피해자의 손액이 1만달러가 넘는다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 범죄의 손액은 1만달러가 넘지만 중요한 법원서류에 그 내용이 없어 이민국은 심한 중죄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표도용범죄 하나로 추방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두 번의 비윤리적인 범죄로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 취소신청을 해 추방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방 취소신청을 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넘었고 범죄전 7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며 심한 중죄를 범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방 취소신청은 신청자의 상황(긍정적인 요소)과 범죄(부정적인 요소)를 저울질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으로 중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추방 취소신청을 통해 추방 면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법정서류검토와 FBI 기록조회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문의:(213)291-9980

TEXT PRO 지금 모



동영상

베스

1 'UFC

2 [남

3 집집

4 총기

5 최진

6 가짜

7 中 열

8 최진

속보

베스

- ▶ 정선희 '故최진실 의붓아버지 이야기까지...'
- ▶ 오늘은 아내를 위해 모텔서 색다른 밤을
- ▶ [미국Talk] 불체자가 무슨 중죄인이나?

- ▶ 최진영 “누나, 악마같은 백모씨 무섭다했다”
- ▶ 세계경제 휘청해도...10만불 포르세 '볼티'
- ▶ [Blog] 흥합요리의 진수



- 1 화장
- 2 [뉴욕
- 3 현명

뉴스홈으로 쭈 맨위로

이메일 | 프린트 | 기사목록 | 내 블로그에 담기



일본 궁술대회



벨기에식 흥합요리



드디어 서부의 끝



가보고 싶은 세계여행

Google ADVERTISEMENT

LA 무지개 택시 www.rainbowlimotour.com  
213.505.5220 주정부허가 20464-P 공항픽업 호텔예약 일일관광 골프투어

오regon 코리아타운 oregonkoreatown.com  
오regon 한인 포털 사이트 버룩시장, 지역 정보, 게시판, 업소록

미국영문대 합격보장 www.useduconsulting.com  
고품격유학 아이비리그 UC 보딩스쿨 양민박사(닥터양) 22년간 수만명 합격



나도 한마디...!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감정표현:

글올리기

코리아데



- 교회
- 4. 한
- <관



- 일반
- H1E
- 21세

전달



- 쿠폰
- 항공
- 이혼

• YELLOW PAGE

검색

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안내



없는것이 없다!  
초고속  
다운로드



미국여행전문  
한스여행사



키친,마루,  
리모델링  
리젠시디자인



한국  
휴대전화  
무제한통화



한국  
휴대전화  
무제한통화



